

瑞山市自願奉仕活動支援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總務委員會
2000. 3. 22

1. 審 查 經 過

- 가. 提出日字 : 2000. 3. 14
- 나. 提出者 : 瑞 山 市 長
- 다. 回附日字 : 2000. 3. 14
- 라. 上程日字 : 2000. 3. 22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 自治行政課長 方景泰)

가. 提案理由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을 정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을 정하여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준칙과 충남도의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서산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시장은 자원봉사단체 및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지원·협력하여야 한다(안 제5조).

-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촉진·지원 및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산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안 제7조).
- 센터의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안 제9조).
- 시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하게 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안 제11조).
-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관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또는 시상을 할 수 있다(안 제16조).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자치단체별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과 소외계층을 도울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코자 사회각계각층의 범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운동의 일환을 목적으로 추진코자 하는바,
- 행정자치부 및 충청남도의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포준안이 시달되어 조례 제정토록 권고된바, 본안과 같이 조례를 제정하여도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질의 : 현재 민간단체별로 자원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데, 본 조례가 제정되면 자원봉사활동을 제도권내로 흡수하여 구속하게 되므로 자율적인 봉사활동에 저해요인이 될 소지가 있으며, 선진국으로 갈수록 국가의 역할은 축소되고 민간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은 무엇인지?

- 답변 : 자원봉사활동을 민간단체별로 분산해서 실시하게 되면 수요자와 공급자의 파악과 혜택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고른 배분등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의 제정으로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촉진 지원하여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함임.

5. 討 論 및 少數意 見 : 없었음

6. 審 査 結 果 : 원안대로 가결

의안번호	제 144 호
의 결 년 월 일	2000. . . . (제 회)

서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2000. 3. 14 .

서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안 번호	144
----------	-----

제출년월일 : 2000. 3. 14.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 제정이유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을 정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육성 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을 정하여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준칙과 충남도의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서산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시장은 자원봉사단체 및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지원·협력 하여야 한다(안 제5조).
- 나.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촉진·지원 및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산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안 제7조).
- 다. 센터의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안 제9조).
- 라. 시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하게 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안 제11조).

마. 시장은 자원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관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또는 시상을 할 수 있다(안 제16조).

□ 참고 관련자료

- 근거법령
 - 행정자치부 준칙(2000. 1. 12), 충청남도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권고
- 예산조치
 - 2000년도 기정예산 4,100만원(센터설치 집기 등, 도비 50%, 시비 50%)
- 입법예고 : 2000. 2.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서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함으로써 주민 개인의 건전한 시민정신을 함양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자원봉사활동은 주민들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정신과 협동정신을 조장하여 자원봉사자 자신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과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의식의 확산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에서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서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법인·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4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2.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교육 및 청소년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5.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6.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7. 재해·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8. 문화·예술·체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9.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10. 기타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제5조(지원·협력) 시장은 자원봉사단체 및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지원·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등) ①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단체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단체 지원 및 자원봉사자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센터 위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

④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서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7조(센터의 설치)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촉진·지원 및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산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교육사업
2. 지역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
3.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4.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및 직장 등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5. 기타 지역사회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센터의 운영) ①센터의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②센터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운영 등) ①시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에는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서 및 위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센터의 운영비는 보조금, 수탁자 부담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④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1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하게 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공공의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자체규정)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자원봉사 진흥

제15조(자원봉사증서 교부) 시장 또는 센터의 장은 일정기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 그 신청에 의한 자원봉사 증서 또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관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또는 시상을 할 수 있다.

제17조(보험가입) 시장 또는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8조(실비지급) ①시장 또는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